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)」이 2011. 8. 24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

○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: 1,564명(변동없음)

○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
- 일반직 : 1,217명 → 1,236명(+19명)
 - 6급이하 : 1,129명 → 1,148명(+19명)
 - 기능직 : 284명 → 265명(△19명)

○ 정원채정기준 조정

-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현행	1%이내	7%이내	26%이내	30%이내	25%이내	11%이상
조정			+1%	+1%		△2%
개정	1%이내	7%이내	<u>27%이내</u>	<u>31%이내</u>	25%이내	<u>9%이상</u>

-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현행	4%이내	13%이내	19%이내	33%이내	31%이상
조정	+1%	+2%	+2%		△5%
개정	5%이내	15%이내	21%이내	33%이내	26%이상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 제2항 제7호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제1항 제6의2호, 부칙 제4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-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 처리지침(행안부예규 제371호)
-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310,943천원 정도

구분	인원	산 출 내 역
계		310,943천원(연간소요액)
일반직	12	소계 : 258,738천원 7급 → 6급 : (49,321-36,883)×3명 = 37,314천원 8급 → 6급 : (49,321-26,669)×5명 = 113,260천원 9급 → 6급 : (49,321-22,280)×4명 = 108,164천원
기능직	2	소계 : 52,205천원 8급 → 6급 : (49,321-26,669)×1명 = 22,652천원 10급 → 6급 : (49,321-21,024)×1명 = 28,297천원 ※기능직 일반직 전환 (기능)10급 → (일반)9급 : (22,280-21,024) = 1,256천원
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1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)」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,
-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은
 - 일반직이 1,217명에서 1,236명으로 19명(6급이하 1,129명에서 1,148명으로) 기능직은 284명에서 265명으로 19명 감하였음
- 정원채정 기준조정은
 - 일반직 공무원은 6급 26%에서 27%, 7급 30%에서 31%, 9급 11%에서 9%로 조정하였으며,
 - 기능직 공무원은 6급 4%에서 5%, 7급 13%에서 15%, 8급 19%에서 21%, 10급 31%에서 26%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)」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금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20%씩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